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7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 15)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u>

	<u>것을 말한다) 환경 조성 및</u> <u>지원에 관한 사항</u>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3) 검토사항

- 「관광기본법」은 관광분야 기본법으로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관광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관광진흥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¹⁾
 - 기본계획에는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반 조성,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과 자원 배분,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재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²⁾에 따라 K-컬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혁신, 국내여행 지원, 지역관광자원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현행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거나 지원을 하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95.5%,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6.47회임. 이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3%,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3.77회,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4%,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가 3.64회로, 고령자, 저소득층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23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국내여행 경험률이 55.9%로 장애인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관광지의 주차장, 이용·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시설 등을 장애인, 고령자 등이

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 2022년 12월)」은 ‘K-컬처와 함께한 관광매력국가’라는 비전 하에 ①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②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③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④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의 4대 전략을 세부 추진과제로 수립하고 있음.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와 숙박·식음료·쇼핑 등 편의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 중임.

- 그러나, 2023년 기준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관광지점³⁾ 2,752개 대비 2024년까지 추진된 ‘열린관광지’ 개소는 162개소(5.9%)로 여전히 낮은 비율이고,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도 2024년 기준 2개소(강릉시, 울산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무장애 관광’으로 정의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일관된 관광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광여건 개선 정책의 수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기본

3) 「202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문체부)에 따른 것이며, “관광지점”은 「관광진흥법」 등 관광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관광지점 범위** 중 지자체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지점으로 선정된 곳으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을 의미함.

* 관광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39개 법령

** 주요관광지점 범위: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관광진흥법),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문화재 보호법), 박물관·미술관 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농원·주말농원 등(농어촌정비법 등)

4) 2024년도에는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조성 중임.

계획’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책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⁵⁾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무장애 관광’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 한정하지 않고 물리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 참고로, ‘무장애’의 개념을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경기도·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무장애’, ‘무장애 관광’ 등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

5)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은 여행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누리는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관광지’의 지속 확대,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관광약자 여행연결망 구축,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3950호,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2024.9.12.)

7) 체계·자구적인 측면에서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호의2가 아닌 제3호의2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호: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호: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무장애’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 조례]

조 례	조 항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무장애 관광</u> ”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무장애(Barrier Free) 도시</u> ”란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무장애 도시</u> ”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3. “ <u>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u> ”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